

모두의 학교를 위한 시흥가온초등학교 학교문화 책임규약

지혜롭고 건강하게 더불어 살아가는 시흥가온교육

(14996) 경기도 시흥시 장현능곡로 33

[**담당교사 364-1705**] 교무실 364-1700~1

1. 책임규약의 목적

• 학교폭력 및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이해를 돕고. 각자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규약을 실천함으로써 모두의 학교를 위한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

2. 학교폭력 이해도 제고

•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에게 신체·정신·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말합니다. 학교에서는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. 예방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, 학교폭력을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에 는 학교 또는 경찰(117)에 신고해 주세요.

「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

▶제2조(정의) 1. "학교폭력"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, 폭행, 감금, 협박, 약취・유인, 명예훼손・ 모욕, 공갈,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, 따돌림,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 반하는 행위를 말한다.

3. 행동에 대한 책임 인식

-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교육지원청에서 열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제1호부터 제9호 *까지 조치를 받을 수 있고, 피해 및 신고·고발 학생에게 보복하는 경우 조치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. 심의위원회 결정 전이라 도 가해학생으로 신고될 경우 피해학생과 분리될 수 있고, 사안에 따라 학교장 긴급조치(출석정지, 학급교체 등)가 있을 수 있습니
 - * 1호(서면사과), 2호(접촉,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), 3호(학교에서의 봉사), 4호(사회봉사), 5호(특별교육 이수), 6호(출석정지), 7호(학급교체), 8호(전학), 9호(고등학교의 경우 퇴학)

4.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이해 및 준수

•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란 학생들의 학습권 및 인권의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시 법령에 따라 학생을 지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(조언, 상담, 주의, 훈육·훈계)를 존중해 주세요.

모두의 학교를 위한 시흥가온초등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약속

<학생>

- ✓ 단지 농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괴롭힘, 언어폭력으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말하겠습니다.
- ✓ 안전하고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.
- ✓ 친구를 괴롭히거나 따돌리는 등 학교폭력을 하지 않겠습 니다.

<보호자/학부모>

- ✓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를 존중하도록 지도하겠 습니다.
- ✓ 학교 규칙을 존중하며, 아이가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 겠습니다.
- ✓ 자녀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, 고운말로 소통하겠습니다.

<교사>

- ✓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 니다.
- ✓ 학교에서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, 평화로운 해결을 위 해 소통하겠습니다.
- ✓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.

학생 성명 (서명)

보호자/학부모 성명 (서명)

> (서명) 교사 성명

※ 서명 회신은 필수가 아닙니다. 희망하시는 분만 서명 회신 부탁드립니다.

2024. 6. 17.

시흥가온초등학교장